

순 서

사회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4
발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07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사례	
❶ 민주노총 통신자료 조회 분석 결과 (1차)	08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❷ 국가기관의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 통신자료 조회	13
장동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❸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	17
방준호 한겨레신문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	
❶ 고객만 모르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관하여	25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❷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비공개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34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❸ 미래창조과학부	45
❹ 방송통신위원회	46
❺ 경찰청	47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고,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39결정의 다수의견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취득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관련 자료를 취득함에 있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의 지배와 자료제공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관련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된 사례 900여 건을 집단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특별히 수사대상으로 소환된 적 없는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통신자료까지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사유가 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대상자 경우 1년간 통화내역에 포함된 “인적사항”이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으로,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이렇듯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난 10월 11일,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법원통제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 입법공청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분들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부당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이호중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별지 -

민주노총 통신자료 조회 분석 결과 (1차)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1. 자료 개요

1) 기본 개요

- 조회 기간 : 2015.3 ~ 2016.3 1년 간
- 조사 방법 : 본인이 통신사에 직접 요청, 민주노총에서 팩스, 메일 등으로 수합
- 대상 : 94명
- 건수 : 681건
- * 1명당 평균 7.24건의 감찰
- * 최다 대상자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31건, 매달 2.6건)

2) 조직별 조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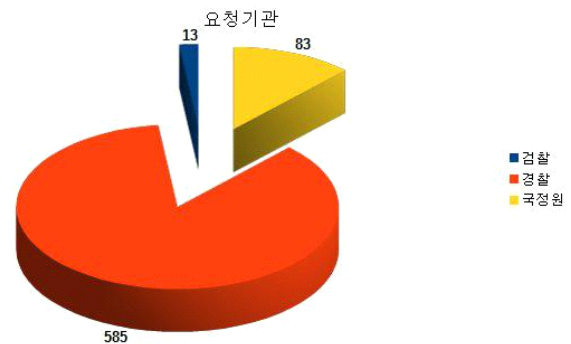
민주노총 사무총국	43명	457건
공공운수노조	16명	101건

인천본부	4명	21건
충북본부	2명	15건
사무금융연맹	2명	15건
강원본부	1명	3건
대전본부	2명	6건
경기본부	1명	4건
화학섬유연맹	3명	10건
금속노조	4명	7건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1명	7건
전교조	1명	6건
서울본부	1명	5건
울산본부	2명	5건
보건의료노조	1명	2건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1명	1건
기타	9명	16건

2. 분석 결과

1) 기관별 조회 횟수

- 경찰 585건
- 국정원 83건
- 검찰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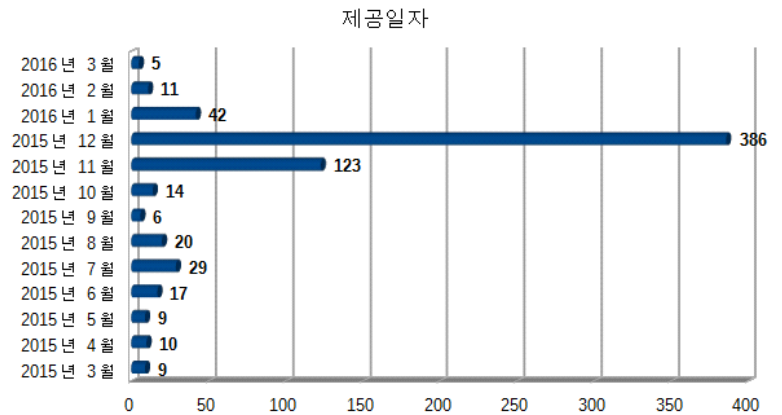
2) 문서번호별 횟수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447 65건 (최다)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524 43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946 33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15-01637 31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588 31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15-01626 29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426 27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857 25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941 25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381 25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610 20건

3) 월별 조회 횟수

- 2015년 3월 9건
- 2015년 4월 10건

- 2015년 5월 9건
- 2015년 6월 17건
- 2015년 7월 29건
- 2015년 8월 20건
- 2015년 9월 6건
- 2015년 10월 14건
- 2015년 11월 123건
- 2015년 12월 386건
- 2016년 1월 42건
- 2016년 2월 11건
- 2016년 3월 5건



4) 특이 사항

- 2015. 11. 30. 민주노총 사무총국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긴급요청이 집중되어 있음.
- 긴급요청이란 서면도 없는 요청을 말하는 것으로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긴급요청 후 사후 자료제공요청서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음.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건 공공운수노조 강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정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이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손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변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문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 민주노총_사무총국 김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건 사무금융연맹 정00
- 2015.11.30. 서울지방경찰청 긴급요청건 사무금융연맹 정00

국가기관의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 통신자료 조회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1. 개요

- 416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참사초기부터 정부기관의 감시, 감청 등 다양한 방식의 인권피해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러한 정부기관의 감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피해자 인권침해 사찰시도 과정과 그 주체에 대한 조사신청을 함
-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종료 되면서 아직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를 통해 국가기관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감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피해가족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	통신조회기관	조회 시기	건	당시 직책
2학년 1반 장애진 아빠 장동원	종로경찰서	2015.05.29	2건	진상규명분과팀장
	국가정보원	2016.01.07		
2학년 3반 유예은 아빠 유경근	종로경찰서	2015.05.29	2건	집행위원장
	남대문경찰서	2015.12.04		
2학년 5반 김건우 엄마 김미나	서울은평경찰서	2015.07.14	1건	회원
2학년 5반 김건우 엄마 박영미	서울은평경찰서	2015.07.14	1건	회원
2학년 5반 이창현 아빠 이남석	국가정보원	2015.12.18	1건	회원
2학년 7반 전찬호 아빠 전명선	충남세종경찰서	2015.04.21	6건	운영위원장
	종로경찰서	2015.05.29		
	서울지방경찰청	2015.06.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12.02		
	남대문경찰서	2015.12.04		
	인천지방검찰청	2016.03.07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 정성욱	경찰청	2015.07.06	2건	선체인양분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12.02		
2학년 7반	서울지방경찰청	2015.06.24	3건	회원

오영석 아빠	경남지방경찰청	2015.07.06		
오병환	경찰청	2015.07.27		
2학년 9반 임세희 아빠 임중호	국가정보원	2015.12.18	1건	회원

- 피해가족 19명 신청 중 9명의 가족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통신 자료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통신조회 시기 416 참사 관련 이슈

- 2015년 4월 -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행령 폐기 요구 시기
- 2015년 5월 - 정부 시행령 강행 규탄 시위 과잉진압
4.16연대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배후세력 지목
- 2015년 6월 - 4.16연대 창립총회, 정부 시행령 폐기 개정안 수용 국민 서명
- 2015년 7월 -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주도혐의로
4.16연대 박래균, 김혜진 위원 사전구속 영장신청
- 2015년 12월 - 특조위 청와대 조사방해 해수부 지침문건 대응 및 청문회 개최
- 2016년 3월 - 416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추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단식농성 돌입

4. 분석

- 국가기관이 피해가족의 동의 없는 통신자료의 무단수집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2015년 5월~7월 사이에 가장 많은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
- 통신자료 무단수집 당시 416가족협의회회의 직책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5월 29일 종로경찰서 3건(유경근, 장동원, 전명선), 2015년 7월 14일 서울은평경찰서 2건(김미나, 박영미), 2015년 12월 18일 국가정보원 2건(이남석, 임종호) 등 같은 날 여러 명의 가족의 통신자료를 요구한 사례를 확인 가능
- 특히 2015년 12월~2016년 1월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큰 이슈가 없었던 시기로, 국가정보원에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3명의 가족(이남석, 임종호, 장동원)의 별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5. 향후 과제

-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할 시 더 많은 가족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었을 것이라 생각됨
- 피해가족을 향한 국가기관의 사찰시도에 대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1.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참여 언론사

- 일간신문(전국) : 한국일보, 한겨레 (2)
- 일간신문(지역) : 경남도민일보, 인천일보 (2)
- 주간신문(지역) : 울산저널 (1)
- 전문매체 : 매일노동뉴스, 미디어오늘, 노동자연대 (3)
- 인터넷매체 :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2)
- 시사주간지 : 시사인 (1)
- 뉴스통신사 : 연합뉴스, 뉴시스 (2)
- 지역방송 : JIBS제주방송, 대구MBC (2)

- 보도전문채널 : YTN (1)
- 지상파방송 : CBS (1)
-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사무처, 민주언론시민연합 (2)
- ※ 17개 언론사, 2개 단체 총 19개 조직 참여

2) 조사 및 조회 기간

- 조사 기간 :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 조회 기간 : 2016년 3월 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3) 조회 대상자 수 : 총 97명

4) 조회 건수 : 총 194회 (1명당 평균 2건의 요청을 받음)

5) 최다 대상자

- 언론사 : 한겨레와 뉴시스에서 기자 1명에게 각각 7회에 걸쳐 통신자료 요청
- 단체 : 언론노조 백재웅 조직실장 1명에게 10회에 걸쳐 통신자료 요청

6) 언론사별 현황

언론사	인원	조회
한겨레	37명	81회
CBS	11명	19회
한국일보	9명	12회
YTN	7명	8회
미디어오늘	6명	9회

언론노조	4명	18회
시사인	4명	11회
오마이뉴스	4명	5회
인천일보지부	3명	5회
뉴스스	2명	8회
매일노동뉴스	1명	5회
연합뉴스	1명	3회
울산저널	1명	2회
대구MBC	1명	2회
노동자연대	1명	1회
JIBS제주방송	1명	1회
경남도민일보	1명	1회
민중의소리	1명	1회
민주언론시민연합	2명	2회
합계	97	194

7) 직종별 현황

○ 기자 : 84명

○ PD : 4명

○ 영상편집 :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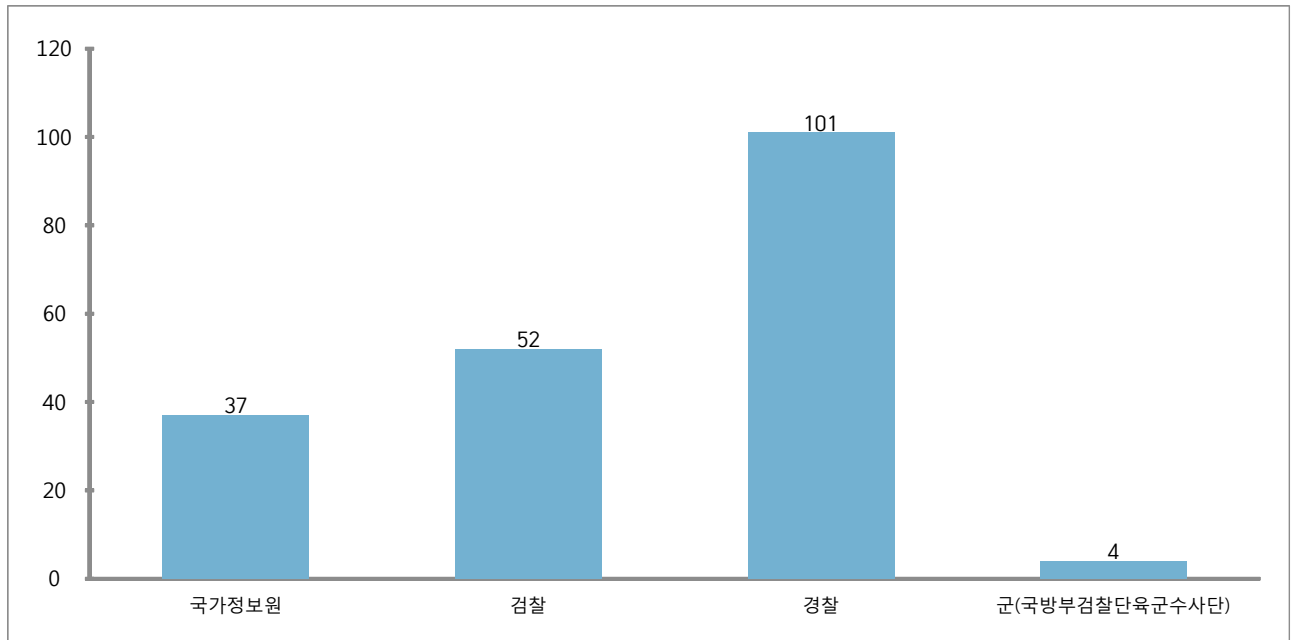
○ 엔지니어 : 1명

○ 언론노조 중앙사무처 및 언론단체 : 6명

※ 언론노조 중앙사무처 제외하고 현업자 중 노조전임자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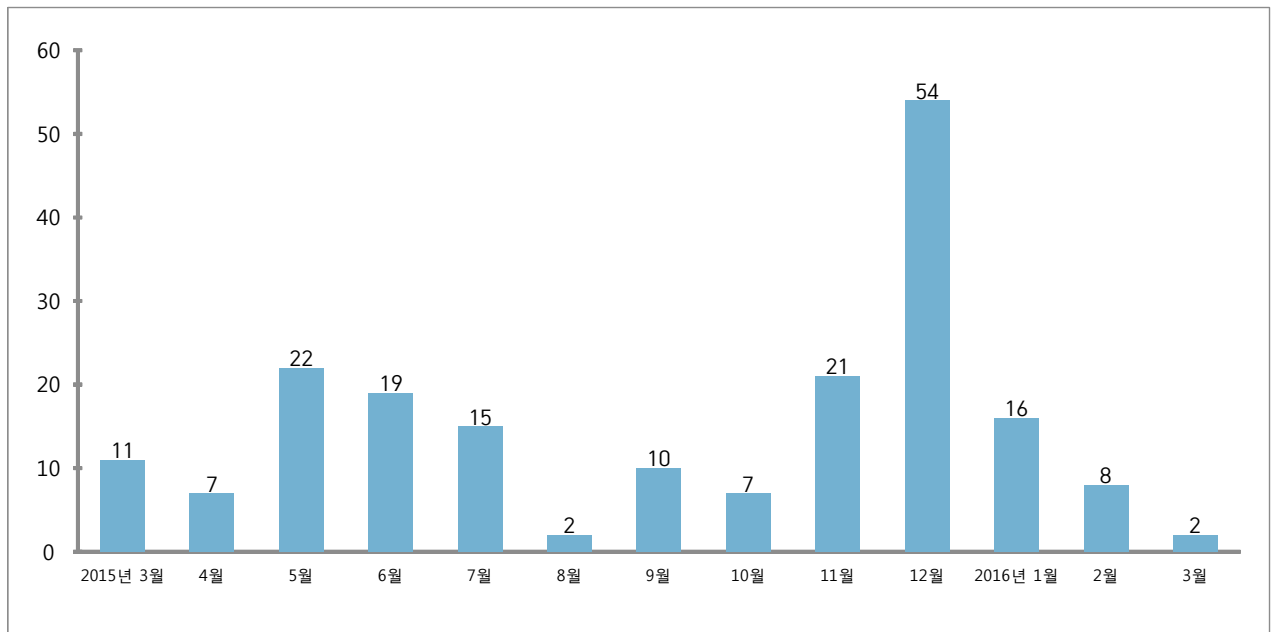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기관별 조회 현황



기관	조회수	비고
국가정보원	37	내국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제한
검찰	52	
경찰	101	
군(국방부검찰단, 육군수사단)	4	민간인사찰 금지
합계	194	

2) 시기별 조회 현황



구분	건수
2015년 3월	11
4월	7
5월	22
6월	19
7월	15
8월	2
9월	10
10월	7
11월	21
12월	54
2016년 1월	16
2월	8
3월	2
합계	194

3) 특이사항

- 조희 당시 육아휴직자, 논설위원에게도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요청
- PD들의 경우 시사 및 뉴스프로그램 제작진들 대상으로 통신자료 요청
- 세월호 1주기 집중 취재 기간, 민중총궐기 집중 취재 기간인 2015년 5월과 2015년 12월에 통신자료 조회 집중
- 전국 일선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본청, 전국 지방 검찰청 및 지청, 국가정보원, 국방부검찰단, 육군수사단 가릴 것 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현업 언론인들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 특히 기자들의 취재와 연관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한 정황들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3.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제보자, 공익신고자가 언론사 취재진 누구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건강보험, 형사사법정보(수사경력, 범죄경력), 차적과 차량 이동경로, 공공기관 보유 정보(건강,주민등록,학적), 소득수준, 직장 등 추가 정보 조회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법인폰을 이유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조차 불가능한 상황. 수사기관은 법인폰 가입자라 할 지라도 '(주)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SBS'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원,

공익제보자를 밝혀낼 가능성 있음

- 어떤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했는지 수사기관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언론인들의 개인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는데 악용하거나 취재를 차단, 방해하는데 악용할 우려 있음
- 특히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부상당한 백남기 농민을 부축자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한 후 보안경찰이 제작진에 출연자 확인을 요구하는 등 공안당국의 노골적인 개입사례도 있었던 만큼,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주변인물 통신자료 조회한 후 해당 언론사 제작진과 통화내역 확보하면 신원 특정 가능함)
- 가입자가 법인이더라도 이용자는 개인이기에 망법상 이용자를 개인으로 해석해 지상파방송사나 대기업 등 법인폰 가입자들도 수사기관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통신사들에 권고만 해도 실행할 수 있음.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는 ‘불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
- 원칙적으로 무분별한 통신사찰을 규제하되, 당장은 수사기관과 이통사는 통신자료를 요청한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함.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 알리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 또한 제출하지 말아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자료는 “요청할 수 있고”(정보·수사기관) “따를 수 있다”(전기통신사업자)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 모두 남용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법원 또한 자료 제공의 책임을 통신사(헌재2010헌마439결정)와 정보·수사기관(대법2012다105482)에 각각 미루어 국민의 피해와 혼란 가중. 3월 3일자 시행 테러방지법 역시 민감정보 포함 국민 개인정보와 GPS, WIFI 등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역시 무차별 악용될 가능성 높음
- 이번 조사는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현재 조회 대기 중인 사례도 많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많아, 언론노조 가입 언론사를 넘어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직능단체들과 현업 언론인 전수조사해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함. 또한 수사기관이 정보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언론인은 가족까지 사례 취합할 필요 있음
- 통신사,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집단 손해배상소송 검토, 방통위와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규제 강화 촉구,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국민사찰방지법)을 정보인권운동 단체,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

고객만 모르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관하여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현행 통신자료제공(요청)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제도¹⁾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정보수사기관의 정보획득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규범적으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선택에 불과한 것으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임의수사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39 결정), 현실세계에서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100% 응해왔고, 이는 정보수사기

1) 법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라 정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官의 요청은 令과 다름이 없으니 이 제도의 본질은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가 아니라 통신자료제공제도이고, 이는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면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의 ‘公文’이 사실상 법원의 ‘令狀’과 같은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박홍근 의원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신3사가 제공한 통신자료의 수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2014년 약 1,000만건, 2015년 약 800만건에 이릅니다.

’14~’15년 통신사별 통신자료제공 현황(단위: 건) *미래부 제출 자료 편집

		SKT	KT	LGU+	합계
2014년	전화번호수	5,283,408	2,487,827	2,414,819	10,186,054
	문서수	320,118	228,003	112,523	660,644
2015년	전화번호수	3,205,643	2,460,217	2,356,120	8,021,980
	문서수	340,166	279,664	246,126	865,956

이런 엄청난 규모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KIC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내부결재처리해 발송하고 이를 이통사들이 전자적으로 처리해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이 사기업인 이통사들의 고객정보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간편해 짐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요청 제도를 이용하는 데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약해진 것이 과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의 고객정보 서버는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서버와 같이 활용되고 있어 ‘통신자료’의 수집, 저장, 관리, 활용이 아웃소싱된 것과 다름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제도는 1978. 3. 1. 전기통신법 제5조 제2항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²⁾.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출’ 제도는 1983. 12. 30.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를 옮겼다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1991. 8. 10.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40년전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인터넷,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가정에 전화기 한 대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 정보통신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의 수단, 내용이 40년전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은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³⁾.

2) 전기통신법 [시행 1978.3.1.] [법률 제3091호, 1977.12.31., 전부개정]

제5조 (통신비밀의 보장)

①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출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3)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부분에 관한 개정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 이후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포털사들의 통신자료 무영장 제공 거부로 인해 사회적 논의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통해 확보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의 확보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KEY’로 기능하고 있고, 특히 우

사실 통신자료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2010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항에서 김연아 선수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김연아 선수를 안으려는 듯 한 행동을 하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후 이 부분 동영상은 ‘회피연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게시판 등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전 장관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Naver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게시판이나 블로그, 인터넷카페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거나 링크로 걸었던 네티즌의 신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 한 명(차경윤氏)이 종로경찰서의 소환을 받게 되었고 이 수사과정에서 Naver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무조건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차경윤씨는 Naver를 상대로 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종로경찰서)에 제공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1. 1. 13.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73). 이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8. Naver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2012. 8. 23.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임의수사라고 판단한 점, 2011. 3. 29.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에

리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자료는 정보주체의 다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 등도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6. 3. 10.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6. 9. 21. 환송심은 원고(차경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상고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계속중입니다).

한편,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이 Naver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2012년 말부터 Naver, Daum, NateOn 등 국내 주요포털사들은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0.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자료를 임의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KT, LG U+ 등은 계속 통신자료를 임의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이 결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경윤氏와 같이 우연히 유인촌 전 장관이 고소하면서(후에 고소를 취하하여 차경윤에 대한 형사사건은 죄가안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수사의 대상이 되어 통신자료제공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통신자료 제공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수사기관 누구도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제공사실을 통지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여부를 확인

해 보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이동사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제공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2013. 4. 29. 통신3사의 각 고객 1명씩을 선정하여 각 통신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달라는 것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 5. 20. 선고된 1심판결은 이동사가 고객의 통신자료 제공현황은 알려주지 못해,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759).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1. 19.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고,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동사들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08856).

2015. 1. 19.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고,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이동사들은 그제야 통신자료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통신사들의 직영점을 직접 내방해야만 통신자료 제공여부를 확인해 주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현황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사들에게 개선권고를 하였고 현재와 같이 웹상에서 로그인해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법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제도개혁 내지 개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6. 3. 10. 대법원이 Naver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정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는 실제 통신자료제공요청건수가 연간 1,000만건을 넘어서는데도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건수는 향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더 증폭되게 되었습니다.

2016. 3.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후 언론노조에서 소속 회원인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하도록 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관계자들, 국회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하나의 문서로 수십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이 밝혀졌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요청사유, 정보주체와의 연관성은 제외한 채 불완전한 통신자료제공현황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15. 1. 19.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알려주라고 할 때의 취지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언제, 왜, 어느 범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인데도, 이통사들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의 정보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처음 통신자료와 관련한 공익소송을 기획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고객을 보호하기 보다는 官의 입장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여전히 고객들에게는 높은 장벽위에 서있는 존재이고, 정보수사기관은 일반인이 함부로 대하기에는 더 높은 곳에 있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이니 이대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나보다’, ‘합법적으로 잘 처리했겠지’, ‘수사 등이 끝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잘 폐기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정보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익상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사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정보가 적절한 통제절차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이어져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사건에서 정보주체의 privacy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별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를 막을 만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통사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최소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 기재요소 중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부분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하고, 만약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획득한 정보수사기관이 당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이 정보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요청과 그에 응한 통신자료제공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무런 통제없이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비공개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조민지 활동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경과

- 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3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⁴⁾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6년 3월 30일 비공개결정을 처분 받음. 서울지경(4호 수사), 국정원(법4조 3항 적용대상 제외)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법원 제10부(판사 김민준)는 서울지검중앙수사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2016년 5월 31일 서울지경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취소 소송을 제기함.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 제4조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선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

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	12	.
2	경기_북부	0	.	0	.
1	경남	1	.	1	.
1	경북	1	.	1	.
1	강원	1	.	1	.
0	제주	0	.	0	.
2	전북	1	.	1	.
1	전남	0	.	0	.

4	인천	4	1	0	3
5	울산	5	.	5	.
0	광주	0	.	0	.
1	대구	1	1	0	.
2	대전	0	.	0	.
2	부산	0	.	0	.
1	전남	0	.	0	.
2	전북	1	.	1	.
0	제주	0	.	0	.
2	충남	2	.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	47	2
21	경찰청	21	.	21	.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4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였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호, 4호	4호, 6호	4호	6호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 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 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비공개결정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4호·6호의 경우 위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위법한 결정이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과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통신자료제공관련 제도개선 제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된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이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8
----------	------

발의연월일 : 2016. 10. 11.

발 의 자 : 이재정 · 최도자 · 김영진
황 희 · 김병기 · 진선미
이학영 · 윤관석 · 원혜영
양승조 · 안민석 · 이춘석
기동민 · 금태섭 · 문미옥
박주민 · 박홍근 · 권칠승
조정식 · 박남춘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

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착신 번호, 전기통신 일시 등)를 법원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그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를 바 없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및 제4항(중전의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절차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법원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군검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의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하고 해당 가입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등법원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제83조의2는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의4(법원에의 통신자료제공) ①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의5(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

료를 제공받은 사실, 해당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유, 제
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
2.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
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
우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 시 제83조의2제4
항과 제83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⑦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한 날에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과 함께 통지유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6(통신자료의 사용제한)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된 통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자료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94조제5호 중 “제83조제3항을”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2. 제83조의5를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 략) ③ <u>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 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 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 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 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 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u> 1. <u>이용자의 성명</u> 2. <u>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u> 3. <u>이용자의 주소</u> 4. <u>이용자의 전화번호</u> 5. <u>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u>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
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
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
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
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의
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절차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
사기관의 장 또는 법원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
당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 제3항-----

⑥ (현행 제8항과 같음)

<삭제>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

신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군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
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
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
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형
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
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이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

<신 설>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자료제공허가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의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하고 해당 가입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신 설>

<신 설>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등법원은 통신자
료제공 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
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
원으로 한다.

④ 제83조의2는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의4(법원에의 통신자료제
공) ①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
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
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제83조의5(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
실, 해당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

2.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

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 시 제83조의2제4항과 제83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⑦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한 날에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과 함께 통지유

<신 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

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6(통신자료의 사용제한)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된 통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자료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94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

<신 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